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[별지 제31호서식] (www.budamgum.or.kr)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(앞쪽)

[ ] 징수유예
폐기물처분부담금 [ ] 분할납부 신청서
[ ] 징수유예 기간 연장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 7일

신청인	상호(명칭)	사업자등록번호
	성명(대표자)	법인(주민・외국인)등록번호
	주소(사업장) (전화번호:)	

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내용				징수유예(기간 연장)를 받으려는 금액
연도(분기)	발행번호	납부기한	금액	

징수유예(기간 연장)를 받으려는 이유

징수유예(기간 연장)를 받으려는 기간

20 . . .부터 20 . . .까지

분할납부의 기한 및 금액

횟수	연도(분기)	발행번호	분할납부 기한	분할납부 금액

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」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기물처분부담금의 [ ] 징수유예, [ ] 분할납부 또는 [ ] 징수유예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시・도지사
한국환경공단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」 제37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	수수료 없 음

210㎜×297㎜[백상지 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

처 리 절 차

신 청 인	처 리 기 관 시・도 또는 한국환경공단
신 청 서 작 성 →	접 수
	↓
	검토 확인
	↓
	결 재
	↓
← 통 보	징수유예・분할납부 또는 기간 연장 승인(불승인) 결정